

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(송경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5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송경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규남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소영철, 신복자, 유만희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태,
이효원, 최민규, 황철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 상 “문화시민도시”라는 용어가 “문화도시”로 개정되었음에도, 이 조례를 인용한 다른 조례들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.
-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은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로 총 5개임.
- 이에 조례 용어상의 혼란을 막고 조례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위 5개 조례상의 “문화시민도시”를 “문화도시”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상에 쓰인 “문화시민도시”를 “문화도시”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참조.

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”을 “문화도시종합계획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후단 중 “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”을 “문화도시종합계획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 중 “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”을 “문화도시종합계획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”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

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”를 “문화도시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략)	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 제13조에 따른 <u>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</u> 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 <u>문화도시종합계획</u> ----- -----.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「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<u>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</u> 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	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<u>문화도시종합계획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) ① (생략)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5.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」 제13조에 따른 <u>문화시민도시종합계획</u> 6. ~ 9. (생략)	제7조(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<u>문화도시종합계획</u> 6. ~ 9. (현행과 같음)

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) ① (생략) ②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 제15조에 따른 <u>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의</u> 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	제8조(예술인 복지 증진 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</u> --- ----- ----- ---.

「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·② (생략) ③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<u>문화시민도시 정책 위원회</u> 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	제8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문화도시위원회</u> --- ----- ----- --.

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시민도시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 상 개정된 용어(문화시민도시→문화도시)를 현재까지 미반영(인용)한 현행 서울시 5개 조례¹⁾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개정된 용어 미반영 조례] 「서울특별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」(총 5개 조례)